

보건복지 ISSUE & FOCUS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¹⁾

임성은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정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함.
- 아동·장애인의 실종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은 특정 사건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지속되기 어려워, 실종에 대한 제도적 관심 제고와 함께 보호·지원 체계 개선과 방향성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실종아동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수행 체계하에서 세부 지원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성이 서로 다른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관리하는 이들 기관의 실종 관련 책무 수행을 종합·조정하는 것에 더해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01.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 개선의 필요성

◆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부족함.

-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아동·장애인의 실종 예방, 실종 후 당사자 찾기, 가족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1) 이 글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주한 연구과제로 수행한 임성은 외(202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선 연구(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음.

- 그러나 실종 예방과 실종 시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위한 제도 도입·개선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 '실종아동 등²⁾ 보호 및 지원 사업'은 주요한 변화 없이 추진되어 옴.
 -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에서 치매 환자를 제외한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및 대응 사업을 별도로 수행함.
 - 아동·장애인의 실종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은 특정 사건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지속되기 어려우며,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실태와 현안 분석 관련 선행연구도 소수에 그침.
 - 지원 체계별 역할 정립 및 관계 기관 간 협력 강화, 전반적인 전달 체계와 관련해 개선할 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이나 논의는 미흡한 상황임.
- ◆ 실종아동·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체계는 협업을 기반으로 하나, 관련 기관들의 지원 공백이나 중복, 유사 업무가 발생함.
-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업무는 크게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소관으로 구분되어 있고 관계 기관별 역할이 설정되어 있으나, 기관 간에 상호 인지하지 못하거나 협업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음.
- ◆ 이 글에서는 치매 환자를 제외한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해당) 대상 실종 예방 및 보호·지원 체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함.
- 실종에 대한 제도적 관심 제고와 함께 보호·지원 체계의 개선과 방향성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02.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

- ◆ 「실종아동법」에 의해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
-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가 이원화되어 보건복지부는 실종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경찰청은 실종자 찾기 업무를 담당함.
 -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여 아동·장애인의 실종 예방, 실종아동·장애인 찾기 및 복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수사와 유전자 검사 대상물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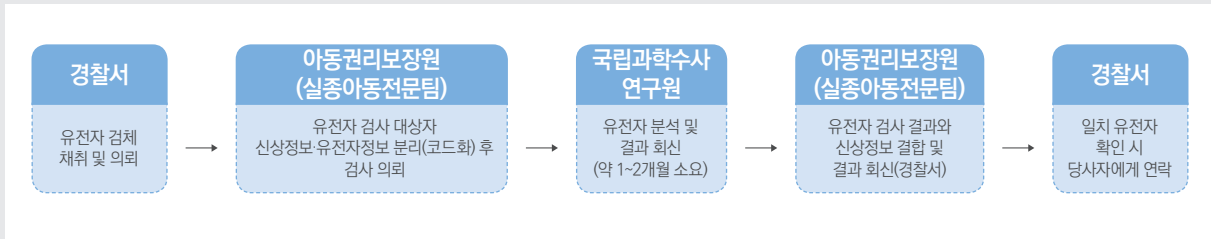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그림 2] 실종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 정보 관리 업무 절차



주: 아동권리보장원의 '실종아동전문센터'는 2024년 '실종아동전문팀'으로 변경됨.

출처: "실종아동전문팀 내부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선 연구", 임성은 외, 2023,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7에서 재인용.

03. 실종아동·장애인 현황

◆ 실종신고가 접수된 아동·장애인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짐.

-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관련 제도 구축 및 정책 시행에 따라 2020년까지 실종아동·장애인 발생 접수 건수는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됨.
 - (아동 실종 접수) 2만 1,980건(2018) → 1만 9,146건(2020) → 2만 6,416건(2022)
 - (장애인 실종 접수) 8,881건(2018) → 7,078건(2020) → 8,344건(2022)
- 2022년을 제외하고,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 후 발견하지 못한 미해제 건수는 매년 10명 이하로 나타나는 등 조기 발견율이 높은 편이며, 아동·장애인의 발견과 가정 복귀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미해제 건수는 점차 감소함.
 - (아동 실종 미해제) 1건(2018) → 4건(2020) → 58건(2022)
 - (장애인 실종 미해제) 7건(2018) → 6건(2020) → 29건(2022)

〈표 1〉 실종아동·장애인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2018~2022년)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아동 (실종 당시 18세 미만)	접수	21,980	21,551	19,146	21,379	26,416
	해제	21,911	21,412	19,054	21,257	26,357
	미해제	1	2	4	5	58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연령 불문)	접수	8,881	8,360	7,078	7,166	8,344
	해제	8,873	8,353	7,089	7,168	8,337
	미해제	7	8	6	7	29

주: 1) 접수: 발생 연도와 무관하며, 과거 발생 건에 대한 당해 연도 접수 건을 포함함. 2) 해제: 접수 연도와 무관하며, 과거 접수건에 대한 당해 연도 해제 건을 포함하고 있어 접수 건보다 많을 수 있음. 3) 연도별 미해제 현황은 2022년 말 기준임.

출처: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경찰청, 2023,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0

◆ 장기 실종 상태인 아동과 장애인은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1천 명이 넘는 규모임. 특히 아동은 20년 이상 장기 실종 비율이 장애인보다 더 높음.

- 실종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으로, 장기 실종 상태인 아동은 총 981명이며, 이 중에서 20년 이상 실종 상태인 아동은 87.6%에 이르는 859명임.
- 장기 실종 상태인 장애인은 총 201명이며, 20년 이상 실종 상태인 장애인은 34.8%인 70명임.

〈표 2〉 장기 실종 상태인 아동·장애인 현황(2022년)

(단위: 건, %)

구분	계	1년 미만	1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아동 (실종 당시 18세 미만)	981(100.0)	58(5.9)	12(1.2)	12(1.2)	40(4.1)	859(87.6)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연령 불문)	201(100.0)	29(14.4)	28(13.9)	19(9.5)	55(27.4)	70(34.8)

주: 실종 접수 연도와 관계없이 실종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산출함.

출처: “실종아동전문팀 내부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3.

◆ 실종아동·장애인의 조기 발견과 실종 예방을 위한 제도를 도입함.

-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 제도를 2004년부터 도입하여 2022년 12월 말까지 총 3만 9,248명의 유전자를 채취하였으며, 실종아동 437명, 실종장애인 254명이 가족과 상봉하여 원가정으로 복귀함.

〈표 3〉 실종아동·장애인 및 실종자 가족 유전정보 채취, 가족 상봉 현황(~2022년)

(단위: 건)

구분	검체 접수			상봉		
	계	실종아동 등	실종자 가족	계	아동	장애인
~2017	33,829	30,969	2,860	479	305	174
2018	1,015	822	193	58	38	20
2019	1,717	1,322	395	49	26	23
2020	797	540	257	44	29	15
2021	740	508	232	36	23	13
2022	1,150	885	265	25	16	9
누계	39,248	35,046	4,202	691	437	254

출처: “실종아동전문팀 내부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3.

- 실종 시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2년 12월 말까지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의 사전등록을 완료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477만 3,256명, 장애인은 총 10만 4,641명임.
 -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누적 지문 사전등록률은 매년 증가하여 2018년 47%, 2019년 52.7%, 2020년 55.8%, 2021년 59.5%, 2022년 63.4%, 2023년 6월 말 기준 65.8%임(김잔디, 2023).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누적 지문 사전등록률은 2022년 4월 말 기준 28.8%임(보건복지부 외, 2022, p. 7).

〈표 4〉 아동 및 장애인의 지문 등 사전등록 현황(2018~2022년)

(단위: 명)

구분	누계	2018	2019	2020	2021	2022
18세 미만 아동	4,773,256	469,152	317,586	191,758	264,211	309,330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 불분)	104,641	8,807	3,385	2,093	4,125	3,961

주: 누계는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가 실시된 2012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누적 집계된 수치임.

출처: 1) "실종아동전문팀 내부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3. 2) "경찰청_지문등 사전등록 접수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2023, <https://www.data.go.kr/data/15037740/fileData.do>

04.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주요 쟁점

◆ 지자체 및 보호시설에 실종 관련 업무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지자체나 보호시설에서는 실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 이에 따라 「실종아동법」에 규정된 보호시설의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절차나 지자체의 관리·감독 역할이 불분명해짐.
- 아동·장애인 실종 관련 업무는 지자체와 보호시설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다수의 지자체와 보호시설에서는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행하는 "아동분야 사업안내"에는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이 포함되어 업무 수행 지침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지자체·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지도는 낮음.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장애인 실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주로는 실종 관련 업무가 경찰 소관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실종아동법」에 따른 실종의 정의에는 미아, 유기, 무연고, 가출이 포함되어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의 하나에 해당하나, 이러한 실종 개념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실종은 당사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보호·지원을 할 대상자가 없는 상황으로 인식되므로, 아동 보호 체계 논의 대상에서도 주목받지 못함.
 -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무연고 상태의 아동도 실종아동에 해당함.

◆ 장애인 대상 실종 예방과 보호·지원에 공백이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은 그 특성상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여 이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종 예방 및 보호·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실종아동법」,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 명칭에서 보듯이 '아동'만 부각되어 '장애인'은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됨.
-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행하는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또는 '실종장애인 보호·지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없음.

- 지자체에도 장애인 실종 관련 업무 부서나 담당자가 없어 아동권리보장원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시설 거주 중인 장애인보다 재가장애인의 수가 많음에도 이들의 실종이나 실종 예방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기에 한계가 존재함.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사업은 위치추적기 제공 중심으로 운영됨.
- 장애인 실종자 통계는 연령을 구분하여 발표하지 않아 실종아동 중 장애가 있는 아동의 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실종아동 등에 대한 통계는 경찰청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음.

◆ 관계 기관 간에 유사 사업을 중복으로 수행함.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종 예방 교육과 강사 양성까지 담당하고 있으나, 이미 실종 예방을 포함하여 다양한 안전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기관이 다수 있음.
 -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 교육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 역량, 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실종 예방 교육 및 강사 양성에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아동권리보장원과 유사하게 지자체나 발달장애인센터 등 장애 관련 기관에서도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유사 사업 수행 여부를 서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신규 지원 사업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유전정보와 신상정보 분리 업무 조정 절차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됨.

- 「실종아동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유전자 검사 대상자의 신상정보와 유전정보 분리 및 재결합 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업무 지연과 비효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됨.
 - 경찰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면, 아동권리보장원은 신상정보와 유전자정보를 분리하여 신상정보만 보관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함.
 -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은 유전자 분석 결과와 신상정보를 다시 결합하여 경찰서에 회신함.
 - 이는 개인정보와 유전자정보의 오남용이나 다른 정보와의 혼용 가능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실종아동법」 제정 당시 이루어진 절차임.
-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통제될 수 있으므로 유전자정보와 신상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기관에서 일괄 관리하되,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해당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어 관련 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실종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음.

- 보건복지부의 “아동분야 사업안내”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홈페이지 내 실종아동 찾기 항목에서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 절차나 지원 내용 등 가족 지원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함.
 - 아동이나 장애인이 실종되면, 그 가족에게 실종자 찾기용 물품, 실종자 가족 활동비 등이 지원됨.
 - 장기 실종자의 가족에게는 의료비, 심리상담, 가족 상봉·사후관리, 실종자 가족 간담회 참여가 지원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함.

- 「실종아동법」에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실종 관련 책무 수행을 종합·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 중심의 종합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 정책 이행을 감독·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함.
 - 실종 관련, 아동 분야에 비해 다른 분야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계가 있음.

◆ 실종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가 감소함.

- 「실종아동법」을 근거로 한 국가 차원의 아동·장애인 실종 대응 및 예방 정책은 수색·수사를 포함한 경찰청 업무 중심으로 발전해 옴.
 -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통해 민간기관 중심으로 유지되고 정책적 중요도가 감소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실종 관련 업무 예산과 인력도 동반 감축됨.
- 아동이나 장애인이 실종되면 경찰에 신고, 의존하게 되므로 지자체와 보호시설에서는 실종 업무 수행에 대한 필요도가 낮음.

05.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 개선 방안

◆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는 「실종아동법」에 따라 현재 세부 지원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향후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종 예방, 교육, 실태조사, 정책자료 구축 등을 지원하고, 경찰과 지자체 중심으로 실종아동·장애인 발생 후 대응과 가족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및 보호시설에서 실종 업무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지자체 실종아동·장애인 업무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실종아동도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므로, 시·군·구 아동보호 관련 부서에서 실종자 가족 지원을 포함하는 실종 관련 업무를 맡는 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아동부서에서 실종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면 장애인부서와의 협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아동부서와 장애인부서로 이원화되어 실종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면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 현황과 조치 현황 등의 업무 내용은 공유되고 통합 관리되어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실종아동법」과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기초하여 지자체 및 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함.
 - 실종에는 미아, 유기, 무연고, 가출이 포함된다는 점을 안내해야 하며, 개념에 대한 인식이 관계 기관 간에 공유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행하는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지자체 및 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함.
- ◆ 지자체의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법」에 따른 보호시설에서 실종아동이나 장애인을 보호할 경우, 이들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센터를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지 매년 점검해야 함.
 - 「실종아동법」에서의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주무부처가 다르므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논의를 통해 관련 청소년복지시설도 지자체 일시보호센터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호시설이 신상카드 제출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종아동·장애인 발생 현황 확인과 신상카드 제출에 대한 관리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
 -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된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안전교육기관, 장애 관련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인식표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실종대응카드를 배포하는 등 재가 및 시설 거주 장애인 대상의 신규 사업 개발을 함께 검토하도록 함.
 - 아동 연령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실종 예방 교육 콘텐츠와 부모·보호자 대상의 실종 예방 및 대처 방안 매뉴얼을 안전교육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배포하도록 함.
- ◆ 유전자정보·신상정보 분리 업무 조정에 대해 검토하는 논의에 착수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관계 기관 간 논의를 통해 업무 통합·조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유전자 검사 절차 변경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 실종자 가족 및 관련 기관에도 민감한 쟁점이므로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실종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아동이나 장애인 실종 시 부모나 보호자가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사항과 절차를 보건복지부의 “아동분야 사업안내”,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제시하도록 함.
 -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간략한 안내서(브로슈어) 형태로도 별도 제작하여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공공시설에 배포하도록 함.
- 장기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는 심리적 차원의 지원을 중심으로 하되, 부모들이 고령인 사례가 많으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 신체적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재정 지속가능성, 지원 자격, 지원 수준 및 범위, 지원 기간은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일괄 지원하기보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내 실종자 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실종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특성상 실종 관련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실종아동·장애인 수색·수사와 보호·지원을 종합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단, 관계 기관 논의와 함께 「실종아동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종합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함.

- 「실종아동법」에서는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 혹은 5년 주기의 정례화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관련 종합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2015년과 2021년에 실종아동 실태조사가 실시된 바 있음.
 - 향후 정기 조사를 통해 시계열적 실태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표 개발과 기존 데이터의 2차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도 연령 불문이 아닌 연령대별로 통계를 발표할 필요가 있음.
 - 통계자료를 발표할 때, 18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적·자폐성·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의 실종 접수 및 해제·미해제 현황도 파악하도록 함.

〈참고문헌〉

- 경찰청. (2023).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_dx_cd=1610
- 공공데이터포털. (2023). **경찰청_지문등 사전등록 접수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37740/fileData.do>
- 김잔디. (2023. 7. 10.). 이젠 휴가 전 필수...18세 미만 66% 지문 사전등록.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9039800004>
- 남성희, 정익중, 유정아, 이승진, 김지현. (2021). **2021 실종아동등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차의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73호 (2024).
아동복지법, 법률 제19605호 (2023).
- 보건복지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2022. 5. 25.). **사라진 아이, 유전자 검사로 만드는 만남의 기적**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371575&tag=&nPage=131
- 아동권리보장원. (2023). **실종아동전문팀 내부자료**.
- 아동권리보장원. (2023). **실종아동등 보호 지원-주요사업**.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3&cntntslid=1339>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 (2023). **사업체계도**. <https://www.missingchild.or.kr/home/contents.do>
- 임성은, 이송희, 오정아, 이수민, 박신아. (202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선 연구**.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익중, 유정아, 남성희, 안은미, 이민주. (2015). **실종아동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집필 임성은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 044-287-8274